



성동구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

아래의 고시공고를 [시군구보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5 - 917호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10월 8일

성 동 구 청 장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성동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등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- 성동구 사유지 등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나.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- 지원계획의 목적, 지원물량 및 지원시기,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, 전문가 자문, 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등

다. 지원대상(안 제5조)

- 관련법규에 의거 사용승인된 단독, 공동주택, 노유자 및 연구시설 등

라. 지원내용(안 제6조)

- 키큰나무의 가지치기 및 위험수목 제거
- 풍수해 피해수목 정비 및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
- 수목 병·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, 녹화기술 자문 및 정보제공 등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참조: 공원녹지과, 전화 02-2286-5661, FAX: 2286-5931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여부와 사유)
- 나. 성명(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붙임 1. 공고내용 1부.

2.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. 끝.

★지방녹지주사 **김진찬** 조경팀장 代**김진찬** 공원녹지과장 **권세동** 도시관리국장 10/06 代**홍명안**

협조자

시행 공원녹지과-12950 () 접수 ()
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/ http://www.sd.go.kr
전화 02-2286-5661 /전송 02-2286-5931 / daichage@sd.go.kr / 대시민공개